

2015. 12월 식품접객업소 위생·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

서울시에서는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「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·원산지 지도서비스」를 [2015. 12. 1.\(화\) 부터](#) 실시합니다.

「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·원산지 지도서비스」는 단속 등 규제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,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, 나아가 「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」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
- 지도기간 : [2015. 12. 1.\(화\) ~ 12. 11.\(금\) 기간 중 4일간 실시](#)
 - ※ 금년도 지도기간 : 3월 ~ 12월 (9개월간, 매월 4 ~5일간 실시/6월 미실시)
- 지도대상 :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**70㎡ ~300㎡이하** 업소 등
(단,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·호프·카페 등은 제외)
- 지도요원 :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(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)
- 지도방법 :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
 -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
- 주요 지도사항 :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
 -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,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
 -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
 - ③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
 - ④ 시설기준 준수,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, 기타 지도 권장사항
- 특기사항 :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, [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](#) 제공
- 확인점검 :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 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[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](#)

「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·원산지지도서비스」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 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,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끝.